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3월 9일

○ 회부일자 : 2009년 3월 11일

3. 제안이유

○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 기관장(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전면 정비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명칭과 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는 한편,「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별표에서 정하였던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조문으로 신설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관할 지역의「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5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위임

다. 각급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6호)

라.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 사항을 삭제함(장기 재직휴가 폐지)

마.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5조제10호)

바.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권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5조제27호)

사.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권한을 학교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2호)

아.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8호, 제7조제6호)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근거규정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 교육감 사무의 일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에서 동법 제2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수정

나.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관할 지역의「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삭제(안 제5조)

○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사무 중 관할 지역의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련 조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다. 각급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조정함(안 제5조제6호)

○ 각급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권한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상향 조정한 바, 이는 공무원 범죄 및 비위 발생 시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의 의원면직 권한을 사건 은폐 및 축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

라.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허가사항 삭제

○ 행정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로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제도가 폐지되어 장기재직 휴가 허가 사항을 삭제함

마.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권을 교육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5조제10호, 안 제5조제27호)

○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권과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바.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권한을 학교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2호)

○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 운영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근무시간 등)제2항에 의거 근무시간이 09:00-18:00임에도 불구하고,「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에 따라 1982. 11. 26.과 1985. 2. 6.에 총무처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한 공문 **"공무원근무시간 변경 협의 회신"**에 따라 근무시간을 09:00-17:00까지 하고 있음.

-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각급 학교에 같이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다른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여 노동조합과 대정부사이에 학교근무자의 근무시간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토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대정부 단체협약 제46조),

- 또한,「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3조에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단위학교의 장이 조정·시행하여 동일근무지에서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근무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사.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6조제8호, 제7조제6호)

○ 현재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에 대한 권한은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직속기관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함.

-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차량교체·교환사항을 위임하게 되면 각 학교 및 기관의 실정에 맞는 수급계획수립으로 행정능률향상과 사무간소화 등의 이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이로 인해 다소 방만한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어, 열악한 충북교육재정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 분권화, 자율화 경향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자치의 근본취지인 학교자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향후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학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6조제8호 및 안 제7조제6호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권한을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시·도의 위임사례 및 효율적인 차량관리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